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가 법률(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세부적인 심사 항목, 신청 서식 등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3, 안 별표 2, 안 별지 제9호 내지 제13호 서식)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세부 심사항목, 지정서 제발급 및 관련 서식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삭제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나목 중 “기업부설 연구기관 안”을 “기업부설연구기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받고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따로 정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7. ~ 5.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제4호”를 “제3호”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따로 정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 3 -

- 4 -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4조의6제1항 및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영 제21조의3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④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⑤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쪽의 ⑤ 대표자명란 및 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전화번호	이메일	

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근무 형태 []전임 []겸임
	전화번호		이메일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제10호·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1호 중 “개황”을 “현황”으로 하고, 같은 쪽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원 현황										
④ 구분	⑤ 일련번호	⑥ 직위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속 부서	⑩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⑪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⑫ 병적 사항	⑬ 발령일	⑭ 신규 편입 여부
⑮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전임 [] 겸임
⑯ 연구전담요원										[] 연구 [] 근무 [] 여부
⑰ 연구보조원										
⑱ 연구관리직원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⑱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를 표시합니다(자택 등 연구시설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에 표시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쪽의 ⑤ 대표자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전화번호		
	이메일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제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인력란을 다음과 한다.

연구개발인력	연구전담요원	구분	변경 전		변경 내용		변경 후	
			연구시설 내 근무		전 입	전 출	연구시설 내 근무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소계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보조원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관리직원		명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기업체의 기업 유형의 첨부서류란 중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을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쪽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기업부설연구소장 및 연구개발인력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근무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인력을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항목	
□ 제조업 부문 세부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자가 진단 평가		I. 기업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정량) 2. 경영자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B.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3.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정성) 4. 경영자의 사업 추진능력(정성) 5.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6.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C.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및 투자 실적 7.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D. 외부 혁신활동 8.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E. 핵심 보유기술관련 활동 9. 핵심 보유기술 마케팅 활동(정성) F. 지식재산권 10. 지재권 권리 범위(정성) 11. 혁신성과 보호방법 및 활동 수준(정성) G. 기술개발 및 사업화 12. 신제품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13. 신제품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14. 신제품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15. 경쟁자 신기술 출시 대응능력(정성) H. 대외인증 및 수상 16. 대외 공경(품질) 관련 인증(정성) 17. 대외 제품 관련 인증(정성) 18. 수상실적(가점) I. 재무적 성과 19. 재무 건정성(부채비율)(가점) 20.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J. 시장경쟁력 21.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II. 연구소 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22.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23.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 개발계획(정성) B. 인적자원 24. 연구개발(R&D) 인력비중(정량) 25. 고급인력(석사이상) 비율(정량) 26.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 개발 추진능력(정성) 27.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28.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C.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29. 연구개발(R&D) 장비 투자비중(정량) 30. 연구개발금액(정량) 31. 감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정성) 32. 기술표준화 수준(정성) 33.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D.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및 투자 실적 34.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제도 수혜 실적(가점) E. 내부 혁신활동 35.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36. 외부 연구개발비 비중(정량) 37. 기술혁신 수행능력(정성) 38. 연구개발 활동의 디지털 사업관리시스템(PMS) 도입(가점) 39.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40.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F. 외부 혁신활동 41.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42.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G.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43. 핵심 보유기술 수준(정성) 44.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구성(정성) 45. 핵심 보유기술 개발 환경 수준(정성) 46. 핵심기술 보완능력(정성) 47. 신산업 관련 기술 개발 능력(정성) 48. 신산업 관련 기술 활용 능력(정성) H. 지식재산권 49.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정량) I. 기술개발 및 사업화 50.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51. 경쟁자 신제품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J. 대외인증 및 수상 52. 대외기술인증(정량) K. 기술 경쟁력 53. 기술이전 실적(가점) 54. 기술경쟁력 향상도(정성) 55. 기술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발표 심사	<정성평가> I. 연구소·기업 역량 A.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1.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2. 기술혁신 동기부여 수준 B.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3.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4.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C. 내부자원 분석능력 5. 테크놀로지 트리(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6.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스와트 분석(SWOT 分析: 기업 내외의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분석 수준 7. 특허맵(특허권 및 특허 출원 상황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분석한 자료) 분석 능력 수준 II. 핵심 보유기술 역량 A. 연구개발인력 1.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2.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수준 3.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증가율 B.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4. 연구개발 장비 구성 수준 5. 핵심보유기술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6.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수준 C. 기술혁신 수행능력 7. 사업관리시스템(PMS), 전사적 자원 관리(ERP: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8. 연구개발 인력 및 설비 등 자원관리 수준 9.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정도 D.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10.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11.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E.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12. 핵심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3. (지원 시)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4. (지원 시)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F.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15.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6. 해당 제품 및 관련제품의 성능 향상 정도 17. 기술 자립도 향상 정도 G. 핵심 보유기술에 의한 시장 경쟁력 18.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19.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20.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현장평가> A. 핵심보유기술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1. 핵심보유기술 개발현황 2. 핵심보유기술 개발방법 3. 기술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B.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5.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6.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C. 핵심보유기술 연구환경 7. 핵심보유기술과 관련 개발환경(시험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8.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D. 기타 9.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10. 핵심보유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종합평가> A.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B.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서비스업 부문 세부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자가 진단 평가	I. 기업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정량) 2. 경영자의 기술(서비스)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B.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3.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정성)

	4. 경영자의 사업 추진력(정성) 5.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6.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C.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및 투자 실적 7.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D. 내부 혁신활동 8. 혁신방법론의 사내 도입 수준(정성) E. 외부 혁신활동 9.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F.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10.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마케팅 활동(정성) G. 지식재산권 11. 지적재산권 권리 범위 및 활동 수준(정성) 12.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구매 활동(정성) H.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13. 신서비스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14. 신서비스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15. 신서비스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16. 경쟁자 신서비스 출시 대응능력(정성) 17. 연구개발에 의한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성과(정성) I. 대외인증 및 수상 18. 대외수상실적(가점) J. 재무적 성과 19. 외부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가점) 20.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K. 시장경쟁력 21.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II. 연구소 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22. 기술(서비스)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23.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서비스) 개발계획(정성) B. 인적자원 24. 연구개발(R&D) 인력비중(정량) 25. 고급인력(석사이상) 비율(정량) 26.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서비스) 개발 추진능력(정성) 27.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28.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C. 연구개발 환경 29. 프로젝트 자원관리 및 시설장비 기반 장치 보유(정량)
--	--

	30. 연구개발금액(정량) 31. 감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수준(가점) 32. 새로운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수준(정성) 33. 기술(서비스) 표준화 수준(정성) 34.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D.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및 투자 실적 35.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제도 수혜 실적(가점) E. 내부 혁신활동 36.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37. 연구개발비 중 교육훈련비 투자 비중(정량) 38.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정성) 39.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40.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F. 외부 혁신활동 41.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42.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G.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43.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수준(정성) 44.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구성(정성) 45.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환경 수준(정성) 46. 핵심기술(서비스) 보완능력(정성) 47.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능력(정성) 48.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활용 능력(정성) H. 지식재산권 49.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역량(정량) I.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50.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51. 경쟁자 신제품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J. 대외인증 및 수상 52. 대외 서비스 인증(정량) K. 기술(서비스) 및 시장 경쟁력 53. 실시간, 상표권 등 권리 이전 실적(가점) 54. 기술(서비스) 경쟁력 향상도(정성) 55. 기술(서비스)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발표 심사	<정성평가> I. 연구소·기업역량 A.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 1. 기술(서비스) 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2. 기술(서비스)혁신 동기부여 수준 B.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3.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4.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C. 내부자원 분석능력 5. 기술(서비스) 로드맵 구성 수준 6.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스왑 분석(SWOT 分析: 기업 내외의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수준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A. 연구개발인력 1.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비중 2.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수준 3.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증가율 B.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4. 연구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구성 수준 5.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6.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인 보상 시스템 수준 C.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7. 사물관리시스템(PMS), 전사적 자원 관리(ERP: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8.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등 자원관리 수준 9.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정도 D.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10.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건수 11.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E.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12.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3. (지원 시)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4. (지원 시)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F.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15.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6.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성능 향상 정도 G.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의한 시장 경쟁력 17.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18.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9.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현장평가> A. 핵심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1.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현황 2.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방법 3. 기술(서비스)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서비스)의 신뢰도(지식재산권, 국내외 서비스 인증 등) B.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5.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6.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C. 핵심보유기술(서비스) 연구환경 7.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개발환경(관련 소프트웨어, 설비 및 장비 등 보유) 8.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D. 기타 9.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경쟁력 및 시장 역량 10. 핵심보유기술(서비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종합평가> A.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B.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개월
신청인 (기업)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주 생산품	주 연구분야	
	종업원 수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 유형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연구소)	상장여부	

지정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명	연구소 인정번호	연구소 인정일자
---------------------	------	----------	----------

핵심 보유 기술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		
	기술핵심 단어		

업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핸드폰	이메일

주요 사업	
----------	--

회사 연혁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업명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뒤쪽)

첨부 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1부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부 4.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로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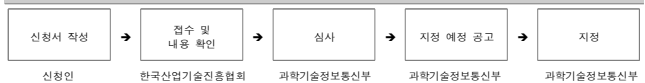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주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 게임, 조경설계 등).
3. '주 연구분야'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4. '종업원 수'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5. '연구전담요원 수'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적습니다(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은 제외합니다).
6.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조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7. '주소'란의 '(본사)'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제자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고, '(연구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적습니다.
8. '상장여부'란은 코스닥, 코스피의 상장 여부를 적습니다.
9. '연구소명'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연구소명을 적습니다.
10. '연구소 인정번호'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번호를 적습니다.
11. '연구소 인정일자'란에는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12.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명칭을 적습니다.
13. '기술핵심 단어'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를 적습니다.
14. '주요사업'란에는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15. '회사연혁'란은 기업의 창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 제조업 부문 신청기업 설명서

1.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재 무 상 태	①총자산(원)			
	②총부채(원)			
	③부채비율(%)			
	④모유 산업재산권 금액(원)			
연 구 개 발 및 주 요 실 적	⑤매출액(원)			
	⑥연구개발비(원)			
	⑦외부 연구개발비 금액(원)			
	⑧연구장비 투자금액(원)			
	⑨종업원 수(명)			
	⑩연구전담요원 수(명)			
	⑪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 수(명)			
	⑫정부포상(수상) 실적			
	⑬대외 기술인증 실적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15. 12. 20

신청인 기업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21 -

2.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역량

(10쪽 중 제3쪽)

구분	주요내용
①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기술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및 방향이 정립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② 기술혁신 중장기전략 수립	구체적인 중장기(향후 3 ~ 5년) 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설명합니다.
③ 개발환경 및 연구장비 보유 수준	기업 내 창조적 개발환경의 수준과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현황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④ 연구개발인력 관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설명합니다. -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유치·보유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 연구개발인력의 규모와 그 구성의 우수성
⑤ 기술혁신 수행능력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 기술혁신 수행 능력 등을 설명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연구·생산 시설 및 외부 연구·생산 시설의 활용 전략 및 체계와 그 성과 등
⑥ 기술축적 및 활용시스템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자료화 실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가진 지식 및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활용하는 실태 등을 설명합니다.
⑦ 기술보호 수준	내부 보안관리규정의 보유·관리,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보안전담 조직·인력 보유,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정기수행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하여 기술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도를 설명합니다.
⑧ 지적재산권 경쟁력수준	기술혁신의 결과로 출원 또는 지적재산권의 경쟁정도를 설명합니다. -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 성과 등
⑨ 사업화 추진역량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 및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등을 설명합니다.
⑩ 기술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향상도	기술혁신의 결과에 따라 기술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이 어떻게 향상될지 등을 설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청서 작성방법

*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 ①~⑧ 항목은 회계결산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전년도 회계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⑨~⑬ 항목은 각 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재무상태

① 총자산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② **총부채**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③ 부채비율 : 재무상태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을 적습니다.

④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손익계산

⑤ 매출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⑥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해당 연도 발생분 기준) +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판매비,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포함)

⑦ 외부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와 외부에서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⑧ 연구장비 투자금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종감명세서와 연구장비 관련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⑨ 종업원 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를 통해 작성합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⑩ 연구전담요원 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⑪ 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 수 : ⑩에 적은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⑫ 정부포상(수상) 실적: 신청기업이 해당 연도에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포상 건수를 적습니다.

-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및 훈·포장만 포함하고, 협회장상 등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⑪ 대외 기술인증 실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 관련 대외 인증 건수를 적습니다.

※ ①~⑧ 항목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22 -

3. 연구개발 개요서

(10쪽 중 제4쪽)

① 핵심보유기술 및 기술경쟁력 (작성내용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 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②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내용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 및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④ 지난 3년간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작성 개수에 제한은 없으며, 자체 연구개발과제나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작성 가능합니다)					
연 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내 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관련 제품	관련 매출액 (백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 24 -

대표이사 주요 경력			
	핵심연구인력 약력(4명 이내)		

5.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제품명	품목구분		
	출시일	연매출액		
	제품 경쟁력 및 장점			제품사진

6.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구 분	명 칭	발명자	국 명	등록일	등록번호	공동출원 기 관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현황

구 분	명 칭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인증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서 작성방법

*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 ①~⑧ 항목은 회계결산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전년도 회계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⑨~⑩ 항목은 각 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재무상태
① 총자산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손익계산
② 매출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③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배당 연도 발생분 기준) +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판매비,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포함)

3. 연구개발
④ 종업원 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치를 통해 작성합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⑤ 연구전담요원 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⑥ 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 수 : ⑤에 적은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⑦ 연구개발인력의 교육훈련 투자금액 : ⑤에 적은 연구전담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투입한 금액을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⑧ 대외 서비스인증 실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비스 관련 대외 인증 건수를 적습니다.
⑨ 정부포상(수상) 실적 : 신청기업이 해당 연도에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포상 건수를 적습니다.
-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및 훈·포장만 포함하고, 협회장상 등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①~⑩ 항목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재무 상태	①총자산(원)			
연구 개발 및 주요 실적	②매출액(원)			
	③연구개발비(원)			
	④종업원 수(명)			
	⑤연구전담요원 수(명)			
	⑥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 수(명)			
	⑦연구개발인력의 교육훈련 투자 금액(원)			
	⑧대외 서비스인증 실적			
	⑨정부포상(수상) 실적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	주요내용
①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	기술(서비스)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및 방향이 정립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② 기술(서비스)혁신 중장기전략수립	구체적인 중장기(향후 3~5년) 기술(서비스)개발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설명합니다.
③ 개발환경 및 연구장비 보유 수준	기업 내 창조적 개발환경의 수준과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현황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④ 연구인력 관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설명합니다. -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유치·보유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 연구개발인력의 규모와 그 구성의 우수성
⑤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신규시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 기술(서비스)혁신 수행 능력 등을 설명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연구·생산 시설 및 외부 연구·생산 시설의 활용 전략 및 체계와 그 성과 등
⑥ 기술(서비스)촉적 및 활용시스템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자료화 실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가진 지식 및 메뉴얼·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활용하는 실태 등을 설명합니다.
⑦ 기술(서비스)보호 수준	내부 보안관리규정의 보유·관리,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보안전담 조직·인력 보유,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정기수행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하여 기술(서비스)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도를 설명합니다.
⑧ 지적재산권 경쟁력수준	기술혁신의 결과로 출원 또는 지적재산권의 경쟁정도를 설명합니다. - 개발되거나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 성과 등
⑨ 사업화 추진역량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 및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등을 설명합니다.
⑩ 기술(서비스)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향상도	기술혁신의 결과에 따라 기술(서비스)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이 어떻게 향상될지 등을 설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 연구개발 개요서

- ① 핵심보유기술(서비스) 및 기술경쟁력
(작성내용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 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②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내용

-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 및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대표이사 및 핵심연구인력

대표이사 주요 경력	■ ■ ■ ■		
핵심연구인력 약력(4명 이내)			
	■ ■ ■ ■		■ ■ ■
	■ ■ ■		

5.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제품명		품목구분	
	출시일		연매출액	
	제 품 경쟁력 및 장점	■ ■ ■ ■ ■ ■ ■ ■		
				제 품 사 진

6.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illegible]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현황

구 분	명 칭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인증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연구소명:
연구분야:
주 소:

위 연구소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을 활용한 가치창출 잠재력이 높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합니다.

최초지정일자:
유효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

※의견 유형 선택 ☐ 지정 예정 기업부설연구소 ☐ 지정 제외 기업부설연구소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의견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의견제출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이 가능합니다)

의견 내용

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 1.
- 2.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또는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10 11 12

의견제출인(또는 기업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첨부서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사유	☐ 지정서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5. 16. 17.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함)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 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u>각 호 외의 부분 단</u>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u>다음</u>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 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 ----- ----- ----- <u>각 호 외의 부분</u> ----- ----- ----- <u>각각 다음</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⑥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기업부설 연구기관</u>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u>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u> ----- ----- -----

없는 사람 다. (생 략) 3. (생 략) ⑦ (생 략)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화촉진법(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 9. (생 략)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 -----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	---

<u>관만 해당한다)</u>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 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 한다) 14.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 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 명하는 서류(국민연금 · 국민 건강보험 · 고용보험 또는 산 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 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를 말한다)	13. <삭 제> 14.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 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 다.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 발급해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하여 -----.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5.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신설>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	
--	--	---	--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변경신고)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의 변경신고 사항을 말한다. ② (생략) <신설>	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 발급해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하여 -----. 제5조(변경신고) ① ----- 별표 1-----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4조의6제1항 및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	
---	---	--	--	--

	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 설>

	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원본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